KOSHA GUIDE A - 47 - 2018

텅스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

2018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승현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
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5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,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(NMAM®), 5th ed, www.cdc.gov/niosh/nmam
-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(U.S.A),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, www.osha.gov/dts/sltc/methods/index.html
- Health and Safety Executive (U.K.),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(MDHS) guidance, www.hse.gov.uk/pubns/mdhs/
-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
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,
 7th Ed, 2018.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7호 (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 (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공표일자 : 2018년 11월 27일
- 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A - 47 - 2018

텅스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· 분석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텅스텐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텅스텐의 측정,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(가) "밀폐"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고형(固形)의 이물(異物)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말한다.
- (나) "밀봉"이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.
- (다) 중량을 "정확하게 단다."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(라) "약"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±10%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.
- (마) 시험조작 중 "즉시"라는 용어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검출한계"라 함은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을 의미한다.
- (사) "정량한계"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정량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최소의 양으로, 단지 검출이 아니라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수준을 의미한다.
- (아) "회수율"이란 채취한 금속 등의 분석 값을 보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, 시료채취 매체와 동일한 재질의 여과지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.

A - 47 - 2018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제 2017-27호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(1) 이 시험법에 필요한 어원, 분자식 및 화학명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() 내에 기재한다.
- (2) 원자량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협회(IUPAC)에서 제정한 원자량 표에 따른다. 분자량은 소수점 이하 제 2단위까지 하고 제 3단위에서 반올림한다.
- (3) 이 시험법에 규정한 방법이 분석 화학적으로 반드시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, 이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이라도 동등이상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(4) 이 시험방법에 표시한 사항 중 탈착율, 검출한계 등은 각조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참고하도록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 값이 분석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(5) 시료의 시험, 바탕시험 및 표준액에 대한 일련의 동일시험을 행할 때 사용하는 시약 또는 시액은 동일 롯트(LOT)로 조제된 것을 사용한다.
- (6) 이 시험법에 사용하는 수치의 맺음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의 규격 KS Q 5002(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)에 따른다.
- (7) 이 시험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학적 상식에 따르되, 이 시험법에 기재한 방법 중 세부조작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자가 적당히 변경 조절할 수 있다.
- (8) 단위 및 기호 : 길이, 넓이, 부피, 농도, 압력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.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는 KS A ISO 80000-1(양 및 단위-제1부: 일반사항)에 따른다.

A - 47 - 2018

종류	단위	기호	종류	단위	기호
	미터	m	농도	몰농도	M
	센티미터	cm		노르말농도	N
길이	밀리미터	mm		밀리그램/리터	mg/L
	마이크로미터	<i>µ</i> m		마이크로그램/밀리리터	μg/mL
	나노미터	nm		퍼센트	%
	기압	atm	부피	세제곱미터	m³
압력	수은주밀리미터	mmHg		세제곱센티미터	Cm³
	수주밀리미터	mmH ₂ O		세제곱밀리미터	mm³
	제곱미터	m²	무게	킬로그램	kg
넓이				그램	g
祖り	제곱센티미터	Cm²		밀리그램	mg
	제곱밀리미터	mm²		마이크로그램	$\mu\mathrm{g}$
	리터	L			
용량	밀리리터	mL			
	마이크로리터	μL			

(9) 온도

- (가)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(Celsius) 법에 따라 아라비아숫자 오른쪽에 ℃를 붙인다. 절대온도는 K로 표시하고 절대온도 0 K는 -273℃로 한다.
- (나) 상온은 $15\sim25$ °C, 실온은 $1\sim35$ °C, 미온은 $30\sim40$ °C로 한다.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°C 이하의 곳을 뜻한다.

(10) 농도

- (가)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 또는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을 표시할 때에는 중량/부피(w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,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부피/부피(v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백만분의 용량비를 표시할 때는 ppm(part per million)의 기호를 사용한다.
- (나) 공기 중의 농도를 mg/m³으로 표시했을 때의 m³은 정상상태(NTP,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: 25℃, 1기압)의 기체용적을 뜻한다. 따라서 노출 기준과 비교 시는 작업환경 측정 시의 온도와 압력을 실측하여 정상상태의 농도로 화산하여야 한다.

A - 47 - 2018

(11) 시약, 표준물질

- (가)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화학용 시약에 규정된 일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제조회사에서 표시하는 농도함 량을 따른다.
- (나) 광도법, 전기화학적분석법, 크로마토그래피법,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쓰이는 시약은 특히 순도에 주의해야 하고,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함유할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검정하여야 한다.
- (다) 분석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M 0015(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방법)에 규정된 지시약을 사용한다.
- (라)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시약을 사용하며, 표준용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히 보관되어 오염 및 변질이 안 된 상태로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.
- (12) 측정·분석 방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(脫鹽水)를 말한다.

(13) 기구

- (가) 계량기구중 측정값을 분석결과의 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나) 중량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5} g(0.01 mg)까지 달수 있어야 하며, 화학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4} g(0.1 mg)까지 달 수 있어야 하며,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(다) 이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 기구는 KS L 2302(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)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여과용 기구 및 기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"여과한다."라고 하는 것은 KS M 7602(거름종이(화학 분석용)) 거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.

5.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

(1) 시료채취 기구 및 측정방법의 선택 시료채취의 목적과 시료채취시간, 방해인자, 예상되는 오염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

A - 47 - 2018

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료채취기구 및 분석방법을 선택한다.

(2)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제조

(가) 대상물질의 특성파악

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준용액을 만들 원액(시약)의 순도와 특성(분자량, 비중, 노출기준)을 파악한다.

- (나) 채취시료 노출기준의 0.1~2배 수준에서 각 분석대상물질의 양을 결정한다.
- (다) 표준용액 제조방법의 결정

일반적으로 표준용액 제조시 표준원액(stock solution)을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방법(희석식)과 표준원액에서 일정량씩 줄여 가면서 만드는 방법(배치식)이었다. 희석식은 만들기가 수월한 반면 표준원액이 잘못되면 계통오차를 줄 수있고 배치식은 여러 검량선 작성용 용액 중 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가 있으나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.

(라) 표준용액의 제조

충분한 수의 표준용액을 준비한다.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를 포함한 최소한 5개 수준의 표준용액을 제조한다.

- (마) 검량선의 작성시 주의점
 - ① 표준원액으로 사용될 원액의 순도, 제조일자, 유효기간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.
 - ② 표준용액, 회수율 등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롯트(Lot)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검량선은 시료 분석조건과 주입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량선이 적정하다고 판정하면 시료를 분석한다. 검량선은 분석할 시료의 농도를 포함해야 하며, 검량선에 사용된 표준용액의 농도보다 높은 시료의 경우는 희석하여 재분석 하거나시료농도를 포함할 수 있는 표준용액을 추가로 제조하여 검량선을 다시 작성한다. 검량선의 적정성은 제시된 분석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상관계수가 0.99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.

(3) 회수율 검정을 위한 시료제조 및 회수율 계산방법

회수율은 여과지를 이용하여 채취한 물질의 분석값을 보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여과지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된 값을 말한다. 이 실험을 통하여 여과지의 오염, 시약의 오염, 여과지에 대한 시료채취 효율 등을 알 수 있다. 시료 배치 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.

A - 47 - 2018

- (가) 회수율 실험을 위한 첨가량을 결정한다. 작업장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는 농도(mg/m³)와 공기채취량(L)에 따라 첨가량을 계산한다. 만일 작업장의 예상 농도를 모를 경우 첨가량은 노출기준과 공기채취량 240 L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계산된 첨가량 3개 농도 수준(0.5~2배)의 양을 반복적으로 3개(3수준 × 3 반복 = 9개) 주입할 여과지와 공시료 3개를 준비한다.
- (나) 분석대상물질의 원액 또는 희석액 일정량을 마이크로피펫 또는 마이크로시린 지를 이용하여 여과지에 주입한다.
- (다) 여과지를 밀봉하고 하루 동안 상온에 놓아둔다.
- (라) 여과지를 바이알에 넣고 추출용액으로 추출한다.
- (마) 시료를 분석하여 검출량을 구한다.
- (바) 다음 식에 의해 회수율을 구한다. 회수율 = 분석량 / 첨가량
- (사) 회수율은 최소한 0.75 이상이 되어야 하나 0.90 이상이면 좋다. 회수율에 대한 평가는 분석자가 해야 한다. 즉 12개의 회수율 실험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회수율간의 일정성이다. 만일 회수율간의 차이가 크고 변이가 심하여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다.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다시 실험을 실시해야한다.



텅스텐(가용성 및 불용성 화합물)

Tungsten(Soluble and Insoluble Compounds)

원자기호: W 원자 183.85 CAS No.: 7440-33-7 량: 비 3.36 g/100 mL

특징, 발생원 - 냄새가 없는 고체, 철 및 비철 합금, 전구의 필라멘트, 용접봉의 전극

및 용도: - 연마제 및 공구제조, 직물 및 도자기 제조 시 주로 사용

고용노동부 1, 3(STEL) - 가용성 OSHA (mg/m') 5, 10(STEL) - 불용성 (mg/m') - ACGIH 3 (mg/m') (Respirable fraction) (mg/m') 5, 10(STEL) - 불용성 5, 10(STEL) - 불용성

동의어: Wolfram

분석원리 및 적용성: 작업환경중 대상물질을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광도계(AAS)를 이용하여 정량한다. 적용농도는 공기량 400 L에서 0.25~5 mg/m³(가용성), 0.6~5 mg/m³(불용성)이다.

* 노출기준이 호흡성/흡입성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시료채취기를 사용하고 그에 설정된 유량을 적용하여야 함.

	시료채취 개요		분석 개요
•	시료채취매체 : 막여과지 (0.8 um cellulose ester membrane) 유 량 : 1~4 L/min 공기량 : - 최대 : 1,000 L - 최소 : 200 L (at 1 mg/m³) 운 반 :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 도록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 에서 운반 시료의 안정성: 25℃에서 보관시 2주 이상 안정함 공시료: 시료 세트 당 2~10개의 현장 공시료		분석기술: 원자흡광광도계법 (Atomic absorption, flame) - 파장: 255.1 nm 분석대상물질: 텅스텐(W) 전처리: 가용성: 25℃ 증류수로 6분간 추출 불용성: 불산 5 mL와 질산 5 mL로 15 0℃에서 6시간 회화 최종용약: 0.05 M 수산화나트륨과 2% 황산나트륨 25 mL 범위: 가용성: 0.1~0.5 mg/시료 불용성: 0.25~12 mg/시료 검량선: 0.05 M 수산화나트륨과 2% 황산나트륨 검출한계: 가용성: 50 ug/시료 불용성: 125 ug/시료 정밀도: 0.029
	방해작용 및 조치		정확도 및 정밀도
•	알려진 방해작용은 없다. Ni, Mo, V, Mn, Cr, Co, Fe은 텅스텐 농도에 방해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.	•	연구범위(range studied): 가용성: 0.42~2.0 mg/m³ 불용성: 0.84~19.7 mg/m³ 편향(bias): + 0.015 총 정밀도(overall precision): 가용성: 0.055, 불용성: 0.056



■ 정확도(accuracy): ± 12.5%

시약	기구
■ 질산(특급)	■ 시료채취매체: 막여과지(cellulose ester filter,
■ 불산(특급)	공극 0.8 μm, 직경 37 mm), 카세트 홀더
■ 염산(특급)	■ 개인시료채취펌프(유연한 튜브관 연결됨), 유량
■ 1%(v/v) 염산 : 500 mL 증류수에 26.5 mL의	1∼4 L/min
염산을 첨가한 후 증류수를 더해 1 L로 맞춤	■ 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
■ 0.5 M 수산화나트륨 : 500 mL의 증류수에 20	spectrophotometer)
g의 NaOH를 첨가한 후 증류수를 더해 1 L로	- 아산화질소-아세틸렌 버너, 중공음극램프
맞춤	■ 100 mL PTFE 비커
■ 20%(w/v) 황산나트륨 : 80 mL의 증류수에 20 g	■ 10 mL, 25 mL 및 100 mL 용량 플라스크
의 Na ₂ SO ₄ 를 첨가한 후 증류수를 더해 100 mL	■ 피 펫
로 맞춤	 가열판(표면온도 150℃)
■ 표준용액 (10 mg 텅스텐/mL) : 표준품을 구매하	■ 진공여과깔대기 - 공극 0.45 μm, 직경 47 mm
거나, 125℃에서 건조된 1.5985 g의 Na ₂ WO₄를	막여과지, 회수용 용기
증류수에 녹인 후, 10 mL의 0.5 M 수산화나트륨	※ 모든 유리기구는 사용 전에 희석 질산으로 씻고
을 첨가하고 증류수를 더해서 100 mL로 맞춤	증류수로 헹구어 준다.
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	

I. 시료채취

한다. ('V. 비고' 참고)

- 1. 시료채취매체를 이용하여 각 개인시료 채취펌프를 보정한다.
- 2. 1~4 L/min의 정확한 유량으로 총 200~1,000 L의 공기를 채취하며,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가 총 2 mg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■ 특별 안전보건 예방조치: 불산을 사용할 때에는 글러브, 실험복, 보안경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(유리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됨), 모든 산 회화작업은 흄후드에서 이루어져야

3. 채취가 끝난 여과지는 밀봉하여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카세트를 바로 세워서 운반한다.

Ⅱ. 시료 전처리

- 4. 진공 여과깔대기에 47 mm 여과지를 올려놓고, 그 위에 카세트를 제거한 여과지를 올려놓는다.
- 5. 여과지에 3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3분간 방치한 후, 진공을 이용하여 증류수를 회수용 용기로 추출하고, 이 과정을 1회 반복한다.
- 6. 추출된 증류수를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옮겨 담는다. 20% 황산나트륨 1.0 mL를 첨가한 후 증류수로 10 mL가 되게 하여 수용성 텅스텐을 분석한다.
- 7. 건조된 여과지(37 mm, 47 mm)를 함께 PTFE 비커에 옮긴 후 질산 5 mL와 불산 5 mL를 가하여 150℃ 가열판에서 회화한다.
- 8. 비커 덮개를 제거한 후 회화용액이 2 mL 남을 때 까지 150℃로 가열한 후, 100℃에서 건조시킨다.
- 9. 비커의 온도가 식으면 1% 염산 10 mL를 가하여 5분간 흔들어 준다.
- 10. 이 용액을 47 mm 여과지에 다시 여과하여 건조시킨다.



- 11. 건조된 47 mm 여과지를 PTFE 비커에 옮겨 담은 후, 질산 5 mL와 불산 5 mL를 가하여 150℃ 가열판에서 회화시킨다.
- 12. 비커 덮개를 제거한 후 회화용액이 1 mL 남을 때 까지 150℃로 가열시킨다. 이때 용액이 검은색을 띨 경우 질산과 불산을 각각 2 mL 가하여 회화시킨다.
- 13. 남은 1 mL의 용액을 100℃로 완전히 건조시킨다.
- 14. 비커에 0.5 M NaOH 2.5 mL와 20% Na₂SO₄ 2.5 mL를 첨가하여 100℃로 잔여물을 용해시킨 다.(15분간)
- 15.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겨 담은 후 증류수로 25 mL가 되게 한다.

III. 분석

【검량선 작성 및 정도관리】

- 16. 시료농도(0.05 12 mg/시료)가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에서 최소한 5개의 표준물질로 검량 선을 작성한다.
 - 1) 표준용액은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0.5 M NaOH 10 mL와 20% Na₂SO₄ 10 mL를 넣은 후 증류수를 넣어 만든다.
 - 2) 표준용액을 공시료 및 시료와 함께 분석한다.
 - 3) 검량선 그래프를 작성한다(흡광도 vs 표준용액 농도(ug/mL)).
- 17. 시료채취매체에 기지량의 분석대상물질을 첨가한 시료(spike 시료)로 아래와 같이 회수율 (recovery) 시험을 실시하여 현장 시료 분석값을 보정한다.

<회수율 시험>

- 1. 예상 시료량이 포함되도록 3가지 이상의 수준 및 공시료를 각각 3반복으로 시료를 만든다.
- 2. 하룻밤 방치한 후 'II. 시료전처리' 과정과 동일하게 전처리하고 현장 시료와 동일하게 분석한 후 회수율 구한다.
- 3. 2에서 구한 회수율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시료의 분석값을 보정하며, 수준별로 회수율의 차이 가 뚜렷하면 수준별로 보정한다.

【분석과정】

- 18. 원자흡광광도계 제조사의 권고와 "분석개요"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기의 조건을 설정한다.
- 19. 시험용액을 각각 분석한다.
- 20. 적당한 비율로 표준용액을 희석하여 분석대상 금속의 검출한계를 구한다.
- 21. 흡광도 기록을 저장한다.
 - ※참고: 만약 시료의 흡광도 값이 검량선 그래프 직선보다 위에 있다면, 시료를 희석하여 재분석하고 농도계산 시 희석계수를 적용한다.
- 22. 측정된 흡광도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료의 금속 농도(Cs)와 공시료의 평균값(Cb)을 계산한다.

IV. 계산

23. 시료의 용액 부피 (V_s) 와 공시료 부피 (V_b) 를 이용하여 채취된 공기중(V) 채취물질의 농도(C)를 계산한다.



24. 다음 식에 의하여 해당물질의 농도를 구한다.

$$C = \frac{C_s V_s - C_b V_b}{V \times R} \ (mg/m^3)$$

 $\cdot C_s$: 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(ug/mL)

 $\cdot C_b$: 공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(ug/mL)

 $\cdot V_s$: 시료에서 희석한최종용량(mL)

 $\cdot V_b$: 공시료에서 희석한최종용량(mL)

· V : 공기채취량(L)

· R : 회수율

V. 비고

- 이 방법은 NIOSH Method 7074에 기초하였고 OSHA Method ID-213, HSE MDHS 91의 내용과 비교한 후 작성하였다.
- 다른 방법: OSHA ID-213은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법(ICP-AES)으로 분석하였고, HSE MDHS 91은 X-선형광분석법(XRF)으로 분석하였다.
- 건강영향 및 예방조치: 단기 노출증상으로 자극, 구역, 호흡곤란, 기침, 피부염, 만성 건강영향으로 페 이상 등의 증상이 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경, 글러브, 실험복 등과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VI. 참고문헌

- 1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,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, 2018.
- 2.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, 7th Edition, 2018.
- 3. Health and Safety Executive(HSE):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Hazardous Substances(MDHS), Method 91, Metals and metalloids in workplace air by X-ray fluorescence spectrometry, 1998.
- 4.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(NIOSH):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, Method #7074, 1994.
- 5.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(NIOSH):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and other databases, 2010.
- 6.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Index of Sampling & Analytical Methods, Method ID-213, 1994.
- 7.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Standards 29 CFR 1910.1000,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
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s Table Z Limits for Air Contaminants, 2006.